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④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③, 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1쪽/3쪽)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일반 현황]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소재지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 표시 합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②개설자(대표자)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③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⑤설립 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시도립	[] 시군구립	[] 지방 의료원	[] 기타 공립	[] 학교 법인	[] 특수 법인	[] 종교 법인	[] 사회복지 법인	[] 사단 법인	[] 재단 법인	[] 회사 법인	[] 의료 법인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11보건소 12보건의료원 13보건지소 14보건진료소
- 설립 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에 √표 합니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시설 현황]

입원실	구분	계 (a+b+c+d+e+f)	일반입원실 (a)														외국인 전용			
			상급																	
	실제 기준	병실 병상	1인	2인	3인	호스피스 1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호스피스 1인	호스피스 2인	호스피스 3인	호스피스 4인			
			입원료 기준	병실 병상																
구분	정신과 입원실 (b)														의료법 신고(허가) 총병상					
	개방							폐쇄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상급			일반				상급			일반				6인 이상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e)				임종실 (f)	의료법 신고(허가) 총병상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무균치료실	임종실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일반	격리	일반	격리	일반	격리	1인	다인	1인	2인	다인	1인	2인	다인	1인	다인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특수 진료실	구분	계	분 만 실	신 생 아 실	수 술 실	회 복 실	응급실		인 공 신 장 실	물 리 치 료 실	강 내 치 료 실	방 사 선 복 소	냉 동 병 동	조 혈 무 세 포 처 치 실	혈 액 분 리 장	임 상 검 사 실	모 자 동 실	조 제 실	탕 전 실	
							일반	격리												유 [] 무 []
실제 기준	병실 병상																			유(내[],외[]) 무(원외공동 이용[],무[])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실제기준 상급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입원료기준 병실·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